

오류동 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

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8-21 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56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2월 8일

구로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사업종류 :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- 사업명칭 : 오류동 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법인명 : 오류동 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68-21 미래빌라
- 대표자 : 장상호

3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치 :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68-21
- 면적 : 5,306.00m²

4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착수예정일 : 2025년 6월

○ 준공예정일 : 2027년 12월

※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
5. 사업대행개시결정일 : 2024년 2월 8일 (고시문 구보 게재일)

6. 사업대행자

○ 사업대행자 : 대한토지신탁(주) (대표 박종철)

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 (삼성동, 아셈타워)

7. 대행사항

- 1) 사업시행자(조합 및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. 이와 같다)와 정비사업토지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의 인수
- 2) 건축계획에 따른 건축허가(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포함, 이하 같음) 등 대관청 인·허가 업무 협조
- 3)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자로서 공정관리, 대관청 행정업무 지원 및 신탁사무의 수행,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 및 관리
- 4) 자금 차입 지원 및 신탁차입 자금의 집행과 관리
- 5) 정비사업비(공사대금 등)의 지출 등 자금의 집행·관리
- 6) 본 사업 조합의 사업시행계획,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업무 협조

8. 기타사항

- 사업대행자는 대행사항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음.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업대행자 고시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대행완료로 고시하는 날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. 이 경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대행자가 행하거나 사업대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2조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처분, 자금의 차입,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 업무는 대행할 수 없음.